

규 정 입 안 서

규정명	「직제규정」		
입안형태	☐ 제 정 ☒ 개 정 ☐ 폐 지		
소관부서	기획평가팀	관련부서	교무학사팀, 간호학과
부서간 협의 결과	- 교무위원회 논의 심의 - 간호학과에 직제별 업무 및 권한 자료 요청		
대학평의위원회	해당사항 없음		
입안사유 (추진배경)	간호학과 재학생 대규모화에 따른 효율적인 학과 운영 및 재학생 관리를 위한 직제 개편 검토 필요		
관련근거 (관계법령)	업무분장규정, 위임전결규정, 교원의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, 보직수당 지급 지침		
주요내용 (제개정내용)	- 안 제13조(대학원장,학장), 제15조(단과대학), 제30조(보직) 개정 - 고등교육법 제11조의2(평가)에 따라 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대한 평가인증을 받는 각 학과(부)의 학장에 대해 업무 권한 부여 - 고등교육법 제11조의2(평가)에 따라 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대한 평가인증을 받는 각 학과(부)에 주임교수 직제 신설		
기대효과	체계적 관리를 통한 학과 운영의 효율성 향상		
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(공청회, 설명회, 의견조회 등) * 「직제규정」, 「학칙」은 기획평가팀 주관 개최	가. 의견수렴 유무	해당사항 없음() 해당사항 있음(●)	
	나. 공청회 및 공고기간 (포털 및 홈페이지)	※ 「직제규정」 개정에 대한 공청회 개최 - 입안예고공청회: 2022. 12. 6.(화) 11:00~12:00 - 전자공청회: 2022. 12. 1.(목)~12. 6.(화) 12:00까지	
	다. 의견제출 유무	해당사항 없음() 해당사항 있음()	
	라. 의견수렴 반영사항	반영 예정	
첨부자료	1. 규정입안서 및 신·구조문대비표 1부 2. 교무위원회 회의 자료 1부		

* 「직제규정」, 「학칙」은
기획평가팀 주관 개최

「직제규정」 개정(안) 산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(안)
제13조(대학원장, 학장) ①대학원에 대학원장을, 단과대학에 학장을 둔다. (개정 2018.12.6.) ②대학원장과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. (개정 2018.12.6.) ③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교무를 통괄하고 대학원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 (개정 2015.3.31., 2018.12.6.) ④(신설)	제13조(대학원장, 학장) ①대학원에 대학원장을, 단과대학에 학장을 둔다. (개정 2018.12.6.) ②대학원장과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. (개정 2018.12.6.) ③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교무를 통괄하고 대학원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 (개정 2015.3.31., 2018.12.6.) <u>④고등교육법 제11조의2(평가)에 따라 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대한 평가·인증을 받는 각 학과(부)의 학장은 소속 학과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원을 지휘 감독한다.</u>
제15조(단과대학) ①단과대학에 학과(부) 업무를 통할할 수 있는 행정실을 둘 수 있다. 다만, 교양대학에는 교양교육지원센터를 둘 수 있으며, 교양교육지원센터장은 교원 또는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, 학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. (개정 2018.12.6.) ②각 학과(부)장은 학과(부)의 소속 교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(부)업무를 총괄한다. (개정 2018.12.6.) ③(신설)	제15조(단과대학) ①단과대학에 학과(부) 업무를 통할할 수 있는 행정실을 둘 수 있다. 다만, 교양대학에는 교양교육지원센터를 둘 수 있으며, 교양교육지원센터장은 교원 또는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, 학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. (개정 2018.12.6.) ②각 학과(부)장은 학과(부)의 소속 교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(부)업무를 총괄한다. (개정 2018.12.6.) <u>③고등교육법 제11조의2(평가)에 따라 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대한 평가·인증을 받는 각 학과(부)에는 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, 주임교수는 학과(부)의 소속 교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학과(부) 업무를 수행한다.</u>
제30조(보직) 보직이라 함은 기구표상의 조직 최소단위 이상의 장의 직을 말한다. (개정 2018.12.6.)	제30조(보직) 보직이라 함은 기구표상의 조직 최소단위 이상의 장의 직을 말한다. (개정 2018.12.6.) <u>단, 고등교육법 제11조의2(평가)에 따라 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대한 평가·인증을 받는 학과(부)에는 주임교수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.</u>
(신설)	<u>부칙(학교법인우석학원- (2022.00.00.))</u> 이 규정은 202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

[첨부 2] 교무위원회(2022. 11. 15.) 논의 자료



간호학과 직제 개편 관련 논의

[2022. 11. 15. 교무학사팀]

1. 추진배경

- 간호학과 재학생 대규모화에 따른 효율적인 학과 운영 및 재학생 관리를 위한 직제 개편 검토 필요(학장은 현재 명예직)
- 간호학과 학문단위 인증 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 및 권한 부여 필요

2. 논의 사항

- 학장에게 결재권한, 보직수당, 책임시수 감경 부여
- 주임교수 직제 신설 및 결재권한, 보직수당, 책임시수 감경 부여

구분	결재권한	보직수당	책임시수감경
학장	신설	신설(25만원: 자율전공대학장 수준)	신설(3시간)
학과장	현행 동일	현행 동일(13만원)	현행 동일(2시간*)
주임교수	신설	신설(5만원: 대학원 전공주임 수준)	신설(1시간: 대학원 전공주임 수준)

* 재학생 250명 이상 학과의 학과장 책임시간 1시간 추가 감경

3. 향후 추진 내용

- 간호학과: 학과 회의를 통해 보직별 담당업무 및 결재권한 안 마련
- 본부: 규정 및 지침 개정(직제규정, 업무분장규정, 위임전결규정, 교원의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, 보직수당 지급 지침)

4. 타대 사례(사립대학 및 모집정원 고려)

연번	대학명	모집 정원	간호대학장				부학과장		주임 교수 유무
			유무	보직 수당	역할	결재권	유무	권한 또는 역할(업무)	
1	우석대학교	150	유	-	-	-	무	-	무
2	중앙대학교	246	유	지급	총괄	유	무	-	무
3	계명대학교	140	유	지급	총괄	유	무	-	무
4	원광대학교	125	무	-	-	-	무	-	무
5	예수대학교	120	무 (간호학부장)	지급	총괄	유	유	부학부장이 실습 업무 담당	무
6	대구가톨릭대학교	120	유	지급	총괄	유	무	-	무
7	한림대학교	105	유 (학장보)	지급	총괄	유	무	-	무
8	동아대학교	100	무 (간호학부장)	-	-	-	무	-	무
9	청주대학교	95	무	-	-	-	무	-	무
10	전주대학교	71	무	-	-	-	무	학과 자체 운영 (인사발령없음)	무
11	나사렛대학교	78	무	-	-	-	무	-	무